

「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제 안 설 명

의 안
번호

3514

곽향기 의원 (국민의힘, 동작3)

- 존경하는 이숙자 위원장님과 박성연·김성준 부위원장님 그리고 선배·동료 위원 여러분! 안녕하십니까? 동작구 제3선거구 출신 국민의힘 곽향기 의원입니다.
-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시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헌법상 평등원칙에 따라 누구나 의정활동 과정에서 동등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.
- 그러나 현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 증인·감정인·참고인 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때, 대상자가 장애 등으로 정보 접근에 제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방식으로 출석요구서를 송부하고 있어 요구 내용의 인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실질적 평등의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합니다.
- 이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출석요구 대상자에게 장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, 장애로 인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출석요구서를 송달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통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과정에서의 절차적 권리 보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

는 것입니다.

- 아울러 국민권익위원회의 ‘17개 광역시·도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개선권고(안)(‘25.5.)’에 따른 행정사무감사·조사 과정에서의 출석요구 및 서류제출 요구에 대한 위반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기준을 반영하였습니다.

- 존경하는 위원님, 본 개정조례안은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고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보완입니다.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